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이수 안내

['17년 교육부 지침변경]

사범대학 학부생, 교육대학원,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이수예정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이수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교직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실습 이수 기준]

구분	내용
이수대상	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(사범대학 학부생,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,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및 수료생)
이수의무 횟수	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(2017. 8월 이후 졸업예정자) ※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: “(모든 교직이수예정자는)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”
실습 횟수 인정	학년도별 1회 인정 ['17년 변경 사항] □ 대 상 1) 사범대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: ' 16년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2) 일반교직 선발생 : ' 17년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□ 예 외 (2017학년도에 한해 한시 적용) 1) 2017년 2월 이전에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2) 2018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중 “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”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